

문서번호 사법 2014-12-02

수 신 임내현 의원님께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성은 간사 02-723-0666 sese@pspd.org)

제 목 의원께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날 짜 2014. 12. 23. (총 2 쪽 이슈리포트 제외)

의원께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법률을 우회하여 사실상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귀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의원께서도 아시듯이, 현직 검사가 사직서를 낸 직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법무부장관이 곧장 검사로 다시 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의2 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기관의 이 같은 부당한 행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감사원은 12월 10일,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통지해왔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의 편법 행위를 묵인해 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가 나서 편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4. 현행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8명, 이명박 정부 때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고, 청와대 근무 종료 직후에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지 1년 6개월 사이에 9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였고, 이 중 3명은 이미 검찰로 복귀하였습니다.

5. 현재 국회에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아래 참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임내현, 김동철 의원 안은 2012년 9월과 2013년 4월에 법사위에 각각 상정되어 논의되었지만, 그 후에는 논의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이 늦어지는 만큼 청와대와 법무부의 편법행위가 반복되고 검찰청법 44조의2 조항은 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위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 2년간 금지(임내현 의원 안, 2012-07-24 발의)
- 검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김동철 의원 안, 2013-04-01 발의)
-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는 퇴직 이후 3년간 검사 재임용 제한(정청래 의원 안, 2013-09-13 발의)

■ 별첨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확대되고 있는 청와대 검사 파견' (2014년 8월 21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정현백

